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변화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를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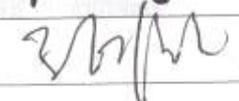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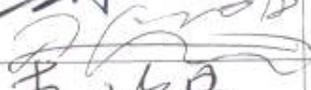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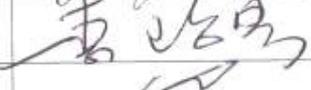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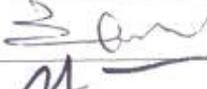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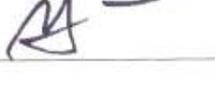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장기권		
2	권태권		
3	김찬욱		
4	노광영		
5	이광복		
6	우승호		
7	죽민서		
8	김도연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